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7.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이장자녀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현행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성적 관리시스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띄어쓰기에 맞게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함.

나. 등급 및 평점으로 관리하는 현재의 학교 성적관리시스템에 맞게 개정 (안 제2조)

○ 중·고생의 경우

-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학년별 또는 계열별)의 100분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자

⇒ 입학 또는 재학 중의 학과성적이 과목별 성취도 “미” 이상이 전체과목의 50% 이상 이거나,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이 6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

○ 대학생의 경우

-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학년별 또는 계열별)의 100분의 70 이내에 해당하는 자

⇒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평점 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인 자

○ 예·체능자의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각 분야별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라. 입법예고 : 제출의견 있음
 - 기 간 : '07. 4. 30 ~ 5. 19(20일)
 - 결 과 : 제출의견 있음
 - 결과요약서

의견제출처	제출의견	조치계획
진부면사무소-312 (2007.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들이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 요망. - 수정안 : “품행이 단정한 자중에서 중·고생은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을 “품행이 단정한 자중에서 중·고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으로 수정. (“입학 또는 재학 중”은 전체 학년을 의미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생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의견 반영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행이 단정한 자 중에서 중·고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과목별 성취도 “미” 이상이 전체과목의 50% 이상 이거나,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이 6등급 이내에 해당하고, 대학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평점 4.5 점 만점에 3.0점 이상인 자. 다만, 중학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고, 대학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학기 학과성적으로 한다.
2. 품행이 단정한 자 중 최근 1년 이내에 기능, 체육, 예능부문에서 도 단위 이상 대회에 참가하여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 <u>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u></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생략)</p> <p>1. <u>품행이 단정한 자 중 중고생은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학년별 또는 계열별)의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고, 대학생은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학년별 또는 계열별)의 100분의 70이내에 해당하는 자.</u> <u>다만, 입학성적이 확인이 안 될 경우, 직전학년의 학과성적으로 한다.</u></p> <p>2. <u>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중 도 단위 이상 개인 또는 단체의 3위 이내에 입상 한 자.</u></p>	<p>제명 : <u>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u></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현행과 같음)</p> <p>1. <u>품행이 단정한 자 중에서 중·고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과목별 성취도 “미” 이상이 전체과목의 50% 이상이거나,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이 6등급 이내에 해당하고, 대학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평점 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인 자. 다만, 중학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고, 대학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 학기 학과성적으로 한다.</u></p> <p>2. <u>품행이 단정한 자 중 최근 1년 이내에 기능, 체육, 예능부문에서 도 단위 이상 대회에 참가하여 3위 이내에 입상한 자</u></p>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